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2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 김영배 • 이기헌 • 박홍배

이학영 · 문금주 · 이훈기

김태년 · 김태선 · 한정애

유후덕 • 조 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점차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 유엔(UN)에 정식 보고되어 온 백여 개국수만 건의 강제실종 사례 중 80% 정도가 미해결로 남아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음.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UN)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고, 2023. 1. 4.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 협약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2023. 2. 3. 부터 발효되었음.

이에 동 협약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 등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이행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다.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 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함께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 마.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 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 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강제실종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이나 그에 소속된 개인, 개인이나 집단에 소속된 개인 중 강제실종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강제실종행위자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 적 자유를 박탈(이하 "자유박탈"이라 한다)한 후 그 자유박탈을 부인, 자유박탈의 사실 또는 자유박탈을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생존 여부,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정보 제공을 거부하거 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
- 2. "강제실종범죄"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 3. "강제실종자"란 강제실종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강제실종범죄피해자"란 강제실종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기타 강제 실종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말한다.
- 제4조(해석의 기준) ① 이 법의 해석·적용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보편적인권 문제와 관련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결의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의 해석·적용에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 그 밖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지역기 구의 강제실종 관련 해석·적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조(강제실종범죄 관련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실 종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1조 이외의 강제실종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자의 생존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기산한다.

- 제8조(강제실종죄)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강제실종 행위자등은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강제실종행위자등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실종자수수·은닉죄) 제8조제1항의 죄로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강제실종 상해·치상죄) 제8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강제실종 살해·치사죄) ① 제8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8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미수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3조(예비, 음모)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조(상급자의 책임 등) ① 단체·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실효적인 지휘·감 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

- 을 때에는 그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상급 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1.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
- 2. 강제실종범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
- ②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의 제11조의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의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국제법에 따른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5조(형의 감경) 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자의 생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규명에 기여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6조(비국가행위자의 강제실종범죄) 강제실종행위자등이 아닌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속한 개인이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7조(강제송환 등의 금지) 국가는 강제실종이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3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 종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 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19조(국가의 구제의무) 국가는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재활, 명예회 복, 사회복귀 등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0조(아동의 보호) 국가는 강제실종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